

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제1회 정기회의

지방자치혁신을 위한

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조정 방안

문석진 서대문구청장

CONTENTS

1. 지방재정 현황 및 실태

- 지방정부의 중앙의존적 재정구조
- 지방재정규모 불균형
- 지방재정 지속가능성 위협

2. 재정분권 실현방안

- (국세편중 조세구조 개편을 위한) **국세-지방세 조정**
- (재원보전기능 강화를 위한) **지방교부세 개혁**
- 분권형 **국고보조금 개혁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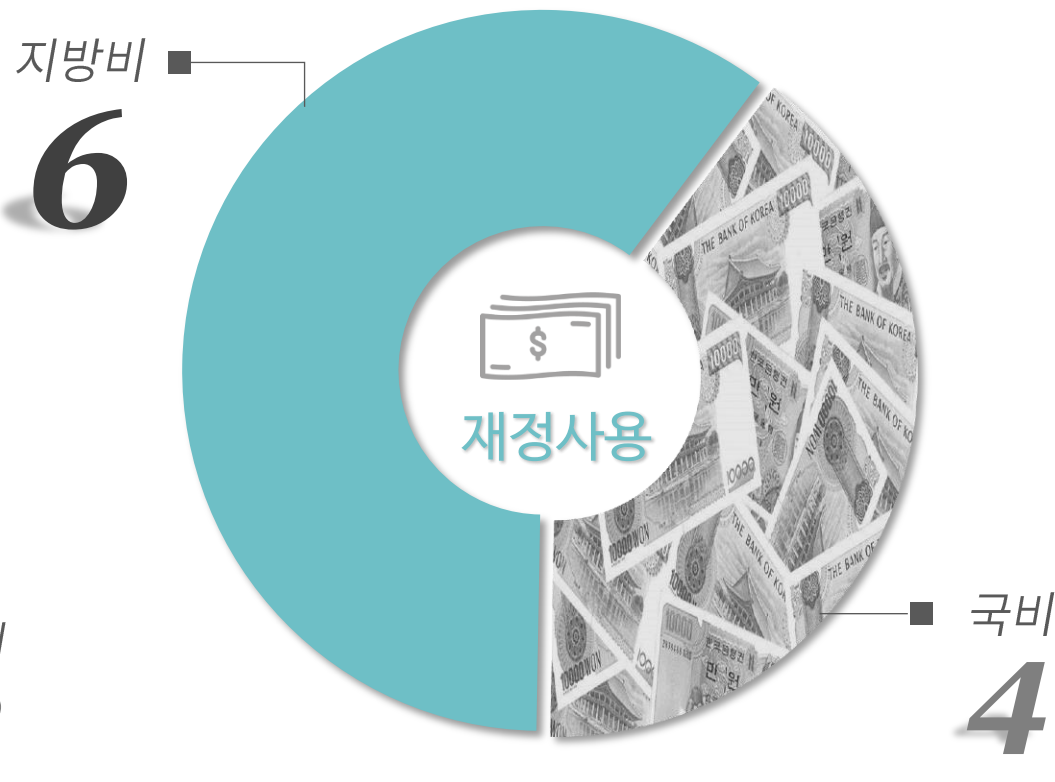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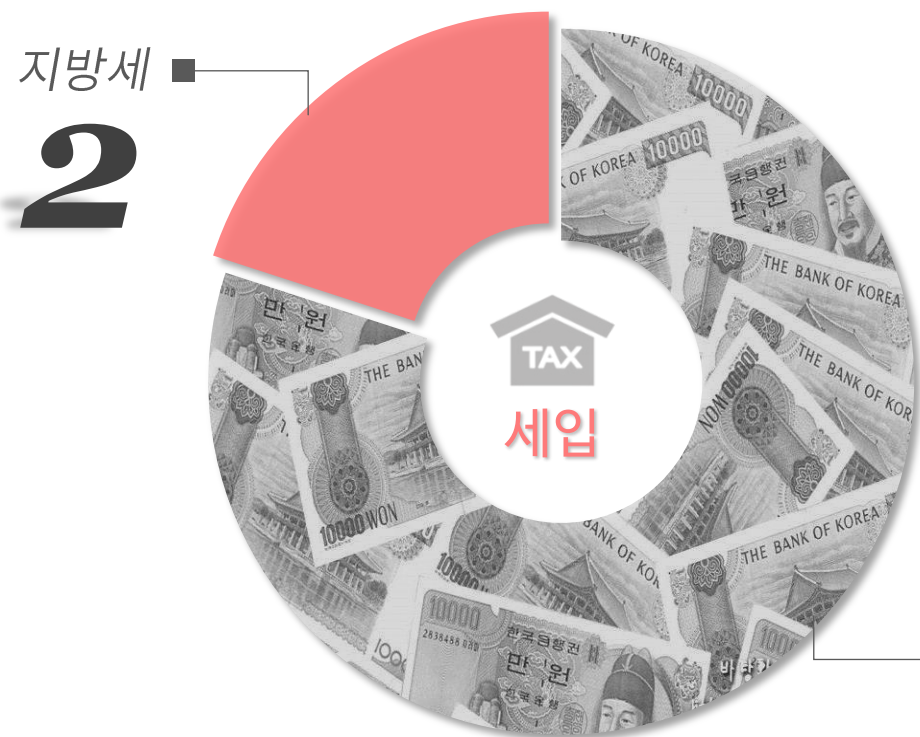
3. 부동산분 양도소득세 지방세 이양 방안

- 현행 양도소득세 과세의 문제점
- 부동산분 양도소득세 이양방안
- 기대효과

1. 지방재정 현황 및 실태

1 지방재정 현황 및 실태

① 지방정부의 중앙의존적 재정구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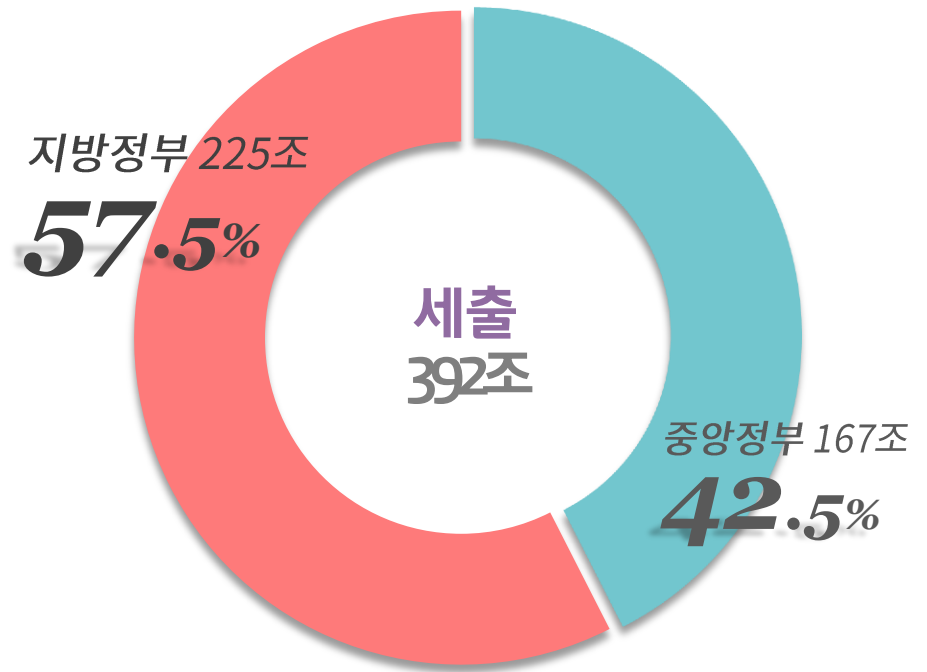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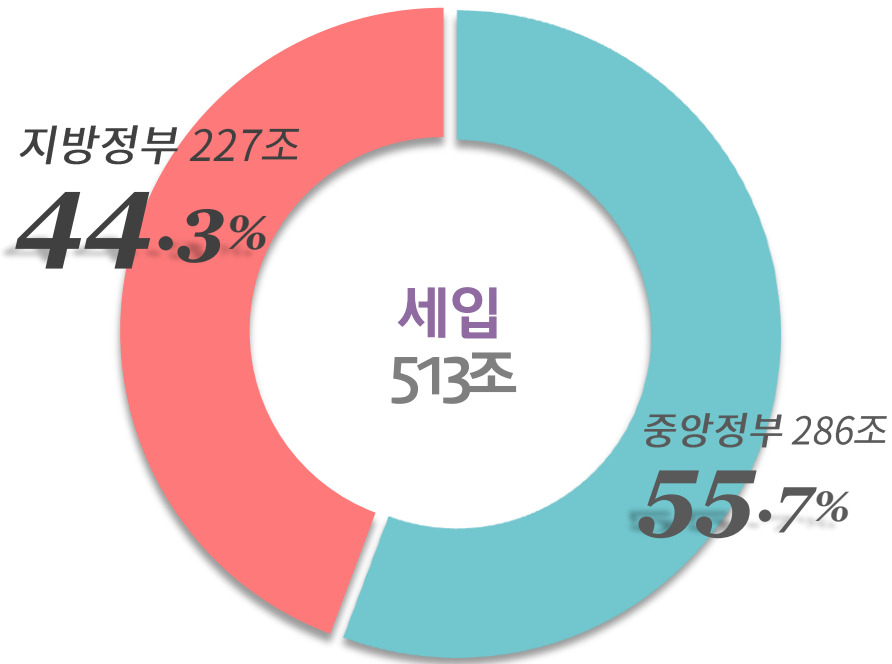
1 지방재정 현황 및 실태

① 지방정부의 중앙의존적 재정구조



1 지방재정 현황 및 실태

② 지방재정 규모 불균형



국가 총 재정규모(2015)

※ 2015년 당초예산(일반회계+특별회계) 순계기준

1 지방재정 현황 및 실태

③ 지방재정 지속가능성 위협

■ 고령인구(65세 이상) 비중

12.7% (2010) >>> 30.1% (2030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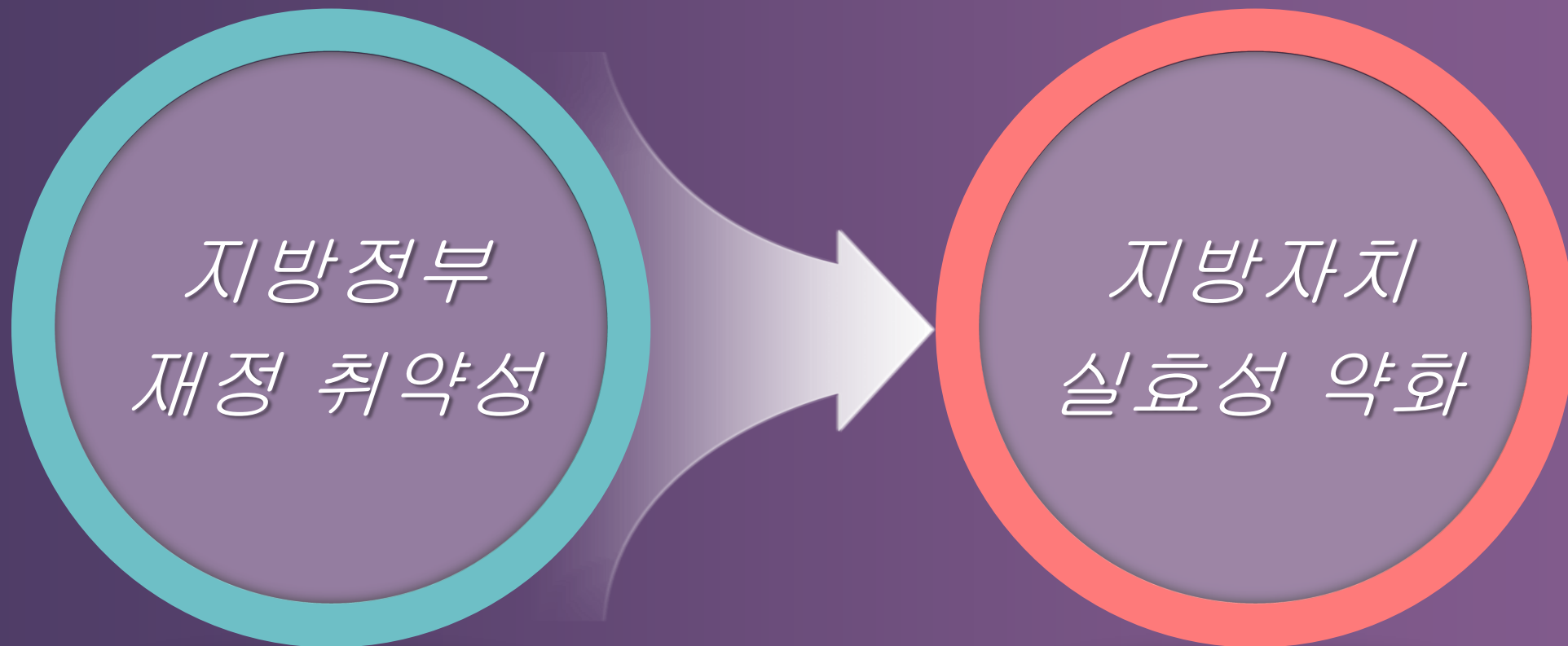
복지예산 비중

19.0% (2010) >>> 25.4% (2015)

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비 지출 급증

[통계청 인구추계 전망]

1 지방재정 현황 및 실태



2. 재정분권 실현방안

① 국세편중 조세구조 개편을 위한 국세-지방세 조정

지방소비세 규모 10%p 확대



'10년 도입 당시 미반영분 5%p + 사회복지비 팽창에 따른 보전분 5%p

5.3조원

국세지방세 조정효과 ('15년 기준)

부동산분 양도소득세 지방세 전환

부동산 거래세의 속성을 내포하여
지방세적 성격을 가진 부동산분 양도소득세를
지방세로 전환

9조원

국세지방세 조정효과 ('15년 기준)

① 국세편중 조세구조 개편을 위한 국세-지방세 조정

법인세 중앙-지방 공동세화

법인세(국세+법인지방소득세)를 중앙과 지방이
일정비율로 나누어 과세하는 공동세 도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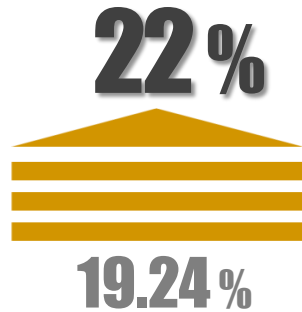
중앙-지방 배분비율 및 지방정부 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배분방식 논의 필요
(* 독일의 중앙-지방 법인세 공동세 배분율 5:5)

15조원

국세지방세 조정효과 ('15년 기준 공동세 비율 40% 가정시)

② 재원보전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개혁

지방교부세율 3%p 인상



지방교부세 연평균 성장률 3.2% 기준(최근 5년 평균성장률) 추산

지방교부세 자치구 교부

현행 지방교부세법에서 제외하고 있는 자치구를
교부세 대상으로 편입하여
중앙정부가 직접 재정부족액 보전

지방교부세법 제6조 제1항 단서조항(자치구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) 삭제

③ 분권형 국고보조금 개혁

4대 복지사업 국비 전액지원

국가최소수준 복지인 4대 기초복지사업
100% 국비지원으로
지방재정여건에 관계없이 안정적 기초복지 보장

4대 기초복지 : 생계급여, 의료급여, 기초연금, 영유아 무상보육

기준보조율 개편 & 포괄보조 도입

기준보조율을 법률로 규정하여 법적 위상 강화 및
중앙정부의 임의적 기준보조율 변경 방지
유사성격 소규모 보조사업을 프로그램 단위로 묶어
성과중심의 포괄보조로 개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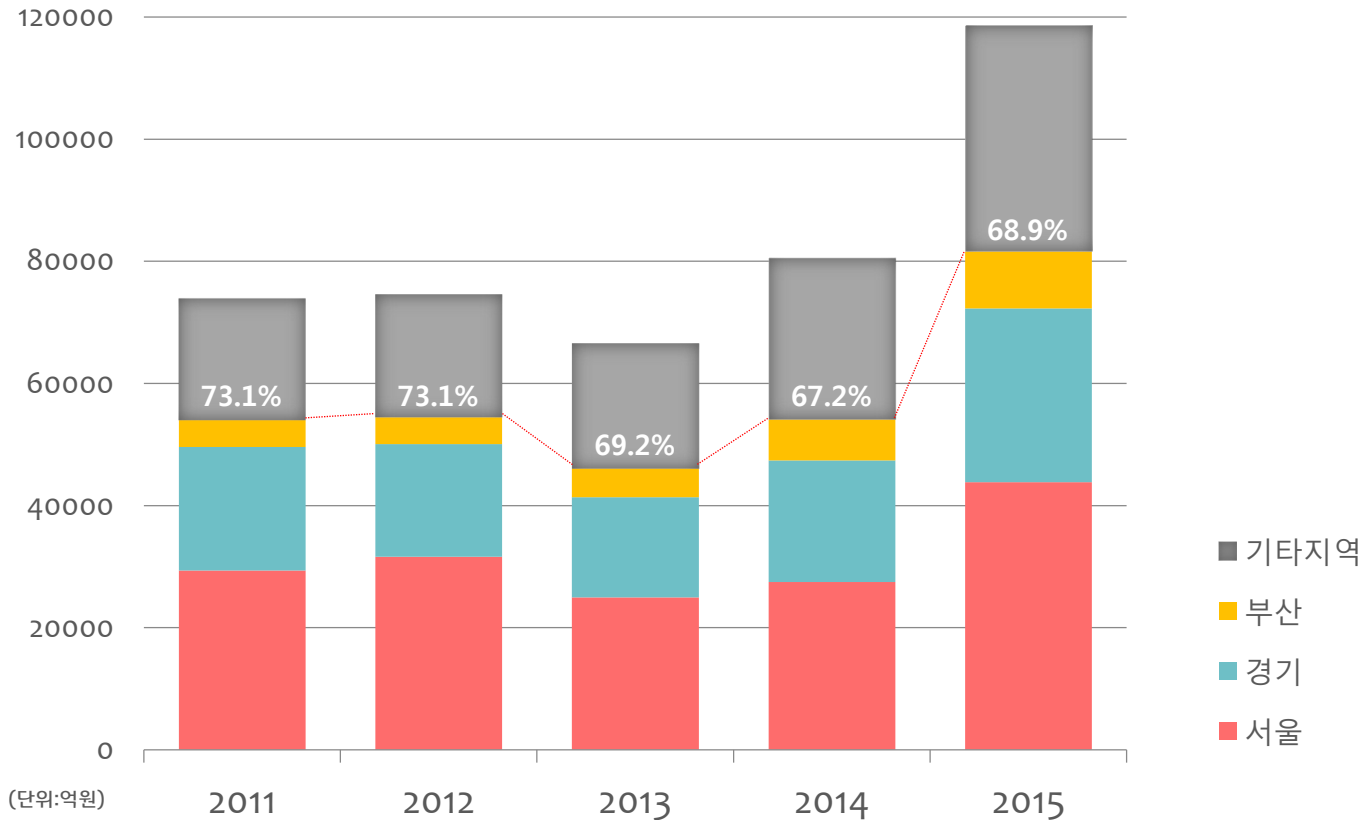
3. 부동산분 양도소득세 지방세 이양 방안

3 부동산분 양도소득세 지방세 이양 방안

지방자치 혁신을 위한

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조정 방안

① 현행 양도소득세 과세의 문제점



☑ 부동산 거래 관련 조세 성격상 국세로 부적절

부동산 관련 조세 중 취득세(거래), 재산세(보유)는 지방세 양도소득세(매도)만 국세
당초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 달성

☑ 납세자 주소지 과세로 수도권 세원집중 구조 문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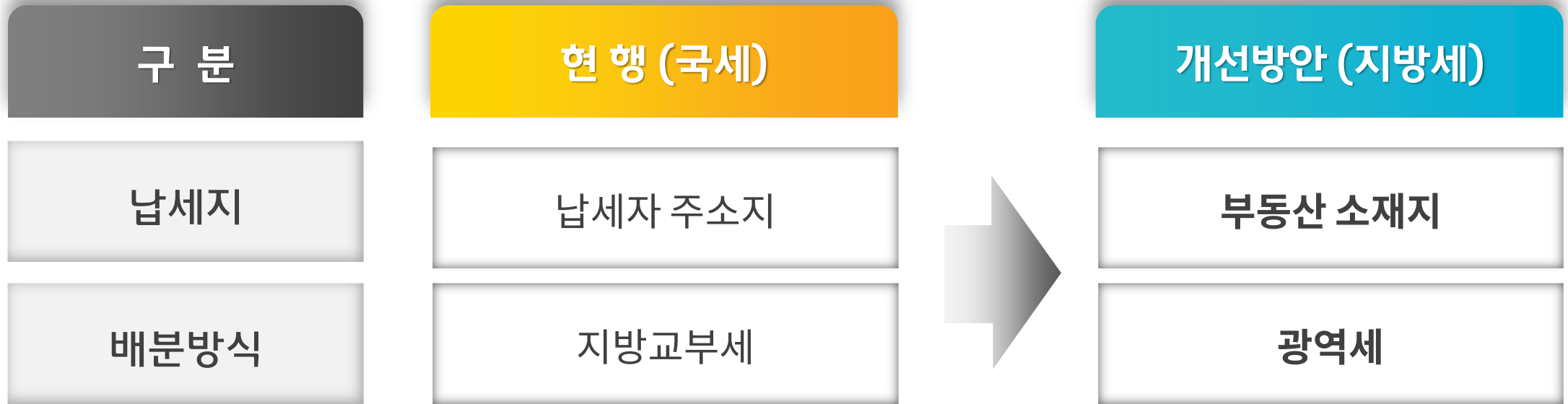
'15년 기준 서울, 경기, 부산 세수 약 8조원(68.9%) 차지

3 부동산분 양도소득세 지방세 이양 방안

지방자치 혁신을 위한

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조정 방안

② 부동산분 양도소득세 이양방안



※ 17개 광역단체별 공동세 형태로 재정조정



소득세법 제6조(납세지) 제88조~제126조의2(양도소득세) → 지방세법 신설(양도소득세)
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등(양도소득세의 감면) → 지방세특례제한법 신설(양도소득세 감면)

③ 기대효과

01

부동산 관련 세제를 일원화하여 부동산 소재지 지방정부로 귀속함으로써
세원의 보편성과 세원관리의 효율성 제고

02

국세-지방세 조정효과로 6:4 세입구조 실현에 기여

03

과세자주권 보장으로
지방정부 재정운영의 권한과 책임성 강화

진정한 지방분권 & 지방자치의 핵심 = 재정분권

Thank you.